


의정활동보고서



제214회 임시회(2007. 4. 12 ~ 4. 24)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14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에도 지역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전 대구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2011년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를 유치했을 때, 우리 도는 함께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이번 「세계육상대회」 유치를 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림은 물론 대구와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미 FTA의 타결로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물론, 소비패턴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그 후 폭풍의 회오리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국론을 통일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에서도 전략적으로 착실히 대비한다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국가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이 더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도 벌써 4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도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쯤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등 물론 도민의 여망을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충실히 반영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한·미 FTA의 타결로 많은 농민들이 실의와

좌절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의회가 도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경북건설이 앞당겨지기를 기원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4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千

차 례

I. 개 황	9
II. 의사일정	10
1. 소 집	10
2. 회 기	10
3. 활 동	11
가. 본회의	11
나. 위원회	12
III. 의안 처리	15
1. 본회의	15
2. 위원회	16
IV. 민원 처리	18
1. 청 원	18
2. 진 정	18
가. 접 수	18
나. 처 리	19

V. 본회의 보고사항 20

1. 의안 접수사항 20

2. 의결의안 이송사항 21

3. 상임위원회 결정사항 22

4.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22

5. 기타 의정활동사항 23

VI. 5분 자유발언 27

부록

□□ 조례안.....14

1.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
5.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경상북도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승인·동의안.....78

1.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건의·결의안.....19

1. 한·미 FTA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2. 조달청 안동사업소 준치에 관한 건의안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14회 임시회는 2007년 4월 12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4월 24일까지 13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21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보면,
4월 12일(목)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권영만·장길화 의원)와 제214회 임시회 회기 결정, 한·미 FTA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고 산회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처리와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였다.

4월 24일(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전찬걸·박진현 의원)청취와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조달청 안동사업소 존치에 관한 건의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07-8호(2007년 3월 29일)

라. 집회일시 : 2007년 4월 12일(목)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7년 4월 12일~4월 24일(13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2회(누계 22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교육 환경	농수산	통상 문화	건설 소방	예결 특위
213회 까지	178	12	27	25	28	22	21	27	16
214회	21	1	3	3	2	4	3	5	
누 계	199	13	30	28	30	26	24	32	16

※ 누계는 제8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7. 4. 12(목) 11:00 (제1차)	1. 5분 자유발언 ○ 권영만 의원(행정보건복지), 장길화 의원(건설소방) 2. 제2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한·미 FTA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원안가결
2007. 4. 24(화) 11:00 (제2차)	1. 5분 자유발언 ○ 전찬걸 의원(교육환경), 박진현 의원(기획경제) 2. 경상북도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조달청 안동사업소 존치에 관한 건의안 4.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 7.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9.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 10.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내 용)	비 고
2007. 4. 12(목) 12:30 (제1차)	1.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215회 임시회 회기협회의 건	원안가결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내 용)	비 고
2007. 4. 18(수) 10:30 (제1차)	1. 조달청 안동사업소 준치에 관한 건의안 2. 한미 FTA대응방안 보고 ○ 경제과학진흥본부	원안가결
2007. 4. 18(수) ~4. 20(금) (3일)	1.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대전)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대전) 3.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오송생명과학단지 (충북)	

<행정정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내 용)	비 고
2007. 4. 12(목) 11:00(제1차)	1. 경상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7. 4. 17(화) ~4. 18(수) (2일)	1. 현지확인 ○ 도립 청양대학(충남 청양) ○ 대전 자연환경연수원(대전 동구) ○ 음성 꽃동네(충북 음성군)	

<교육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내 용)	비 고
2007. 4. 16(월) ~4. 17(화) (2일)	1. 현안사항 보고 및 현지확인 활동 ○ 교육청 현안사항 보고(관사운영방안 등) ○ 팔공산 도립공원,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 ○ 경상북도교육연수원, 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내 용)	비 고
2007. 4. 5(목) 11:00 제213회 폐회중 제1차	1. 한·미FTA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2007. 4. 18(수) ~4. 20(금) (3일)	1. 현지확인 ○ 한우지킴이운동 추진상황(정읍시 산외면) ○ 고추장민속마을(순창군 백산면) ○ 농산물유통공사 대구경북지사(대구)	

<통상문화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내 용)	비 고
2007. 4. 18(수) ~4. 20(금) (3일)	1. 현지확인 ○ 가야문화권 정비 및 관광개발(고령, 성주) ○ 칠서산업단지 등(경남 함양군) ○ 문화엑스포, 방폐장 건설 관련(경주)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내 용)	비 고
2007. 4. 12(목)	1. 간담회 ○ 임하댐 탁수 피해보상 촉구결의안	
2007. 4. 13(금) 11:00 (제1차)	1.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 2.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7. 4. 16(월) 11:00	1. 정책간담회 개최(경주시) ○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의용소방대장 46명)	
2007. 4. 18(수) ~3. 19(금) (2일)	1. 현지확인 ○ 부산시 지역개발현장 비교견학 - 가덕대교·거가대교·신항만 공사현장, 녹상 공단, 광안대교 등 ○ 거제시 지역개발실태(거제대교 등) ○ 돌산대교, 여수세계박람회장 ※ 『2007 경북방문의해』 홍보·참여분위기 조성	

Ⅲ. 의안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 의	심 의 · 의 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10 (85)	10 (85)	9 (65)	1 (20)				
조 례 안	소 계	6 (55)	6 (55)	5 (41)	1 (14)				
	의 회 제 안	2 (13)	2 (13)	2 (10)	(3)				
	도지사 제 출	4 (29)	4 (29)	3 (22)	1 (7)				
	교육감 제 출	(13)	(13)	(9)	(4)				
예산·결산		(8)	(8)	(2)	(6)				
동의·승인		(8)	(8)	(8)					
건 의 안		1 (3)	1 (3)	1 (3)					
결 의 안		1 (6)	1 (6)	1 (6)					
기 타 안		2 (5)	2 (5)	2 (5)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의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10 (91)	10 (85)	6 (55)	(8)	(8)	1 (3)	1 (6)	2 (5)	(4)		1 (2)
의회운영	1 (12)	1 (11)	1 (6)		(1)		(3)	(1)	(1)		
기획경제	1 (17)	1 (16)	(12)		(2)	1 (1)			(1)		(1)
행 정 보건복지	3 (16)	2 (15)	2 (12)		(3)						1 (1)
교육환경	(18)	(17)	(15)		(2)				(1)		
농 수 산	1 (3)	1 (3)	(1)			(1)	1 (1)				
통상문화	(5)	(4)	(1)			(1)	(2)		(1)		
건설소방	2 (7)	3 (7)	3 (7)								
특 별	(8)	(8)		(8)							
본 회 의	2 (5)	2 (5)	(1)					2 (4)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상임위 부결(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4건>

- 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 12. 18 교육환경위원회)
- ②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6. 11. 29 경제통상위원회)
- ③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안
(’07. 1. 24 기획경제위원회)
- ④ 구미시장의 공무원을 동원한 코오롱정리해고자 농성장 강제철거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07. 1. 24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 계류 중인 안건 : 2건>

- ①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회)
- ②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정	사회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1 (16)	(1)	(1)	(3)	1 (4)	(1)		(4)	(2)	
의회운영										
기획경제	(2)			(2)						
행 정 보건복지	(2)	(1)	(1)							
교육환경	(4)					(1)		(3)		
농 수 산	(2)								(2)	
통상문화	(2)			(1)				(1)		
건설소방	1 (4)				1 (4)					
특 별 위 원 회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1 (16)	1 (16)				
의 회 운 영						
기 획 경 제	(2)	(2)				
행 정 보 건 복 지	(2)	(2)				
교 육 환 경	(4)	(4)				
농 수 산	(2)	(2)				
통 상 문 화	(2)	(2)				
건 설 소 방	1 (4)	1 (4)				
특별위원회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이우경·한혜련 의원 외 28 (2007. 4. 2)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07. 4. 3)
경상북도지사 (2007. 4. 3)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07. 4. 3)
경상북도지사 (2007. 4. 3)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2007. 4. 3)
경상북도지사 (2007. 4. 3)	경상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2007. 4. 3)
농수산위원회 (2007. 4. 9)	한·미FTA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농수산위원회

2. 의결의안 이송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비 고
2007. 3. 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007. 3. 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 3. 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2007. 3. 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안	
2007. 3. 29	경상북도 지 사	제4기(2007~2010)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07. 3. 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7. 3. 2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 3. 29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 3. 29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 4. 2	경상북도 의 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상임위원회 결정사항

위 원 회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상임위심사결과 (심 사 일)
운영위원회	김숙향 의원 외 13 (2006. 12. 26)	구미시장의 공무원을 동원한 코오롱 정리해고자 농성장 강제철거 진상조사 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부결) (2007. 3. 14)

4.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농 수 산 위 원 회	2007. 3. 29	안동 풍산읍 예천 호명면	- 강풍피해지역 현지확인 3월 28일 발생한 기습강풍으로 인한 피해지역 방문 및 피해농가 지원대책 협의
"	2007. 4. 5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군위 효령면	- 한·미FTA 대비 대책회의 및 축산 농가 현장방문 - 농수산국장 업무보고 및 대응책, 지원 대책 협의 - 축산농가현장방문 군위 효령소재 영진 농장(전영한)
통상문화 위 원 회	2007. 3. 31	서울시청광장	2007경북방문의해 관광홍보열차운행 행사 - 서울시내 지하철 경북관광홍보 운행 발차식 개최 참석

5. 기타 의정활동사항

○ 도-쿠어스텍 투자유치 MOU 체결식

- 일 시 : 2007. 3. 14(수) 10: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이상호 통상문화위원장, 도의원

○ 6. 3 동지회 경북지부 결성대회

- 일 시 : 2007. 3. 15(목) 14:00
- 장 소 : 경주청소년수련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상북도 여성단체 이민여성 거주마을 자매 결연식

- 일 시 : 2007. 3. 16(금) 11:00
- 장 소 : EXCO
- 참 석 : 이상천 의장

○ 봄철 나무심기 행사

- 일 시 : 2007. 3. 17(토) 10:30
- 장 소 : 포항 흥해 오도리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기공식

- 일 시 : 2007. 3. 19(월) 15:00
- 장 소 : 칠곡면 지천면 현장
- 참 석 : 방대선 부의장, 도의원

○ 행자부장관 간담회

- 일 시 : 2007. 3. 20(화) 12:00
- 장 소 : 중앙청사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재)경상북도 청소년수련관 2007년 이사회

- 일 시 : 2007. 3. 20(화) 17:00
- 장 소 : 청소년수련관
- 참 석 : 이우경 행정보건복지위원장

○ 제15회 물의날 행사

- 일 시 : 2007. 3. 22(목) 11:00
- 장 소 : 상주문화회관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도의원

○ 상이군경회 도지부 제47차 정기총회

- 일 시 : 2007. 3. 26(월) 11:00

- 장 소 : 구미 상이군경도지부 복지회관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 경북북부지역 발전전략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07. 3. 28(수) 13:00
- 장 소 : EXCO
- 참 석 : 장대진 교육환경위원장

○ 포스코 연료전지 공장설립 MOU체결

- 일 시 : 2007. 3. 30(금) 11:00
- 장 소 : 포항시청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 경북관광홍보 발차식

- 일 시 : 2007. 3. 31(토) 14:00
- 장 소 : 서울시청 광장
- 참 석 : 이상천 의장, 이상호 통상문화위원장, 도의원

○ 경북고향장터 “사이소의 날” 선포식

- 일 시 : 2007. 4. 2(월) 14:00
- 장 소 : 도청 제1강당
- 참 석 : 방유봉 농수산위원장

○ 대구경북 한방산업진흥원 이사회

- 일 시 : 2007. 4. 3(화) 11:00
- 장 소 : 경북테크노파크
- 참 석 :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

○ 경북농협지역본부 청사 준공식

- 일 시 : 2007. 4. 5(목) 14:00
- 장 소 : 경북지역농협본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향토예비군 창설 39주년 기념행사

- 일 시 : 2007. 4. 6(금) 14:00
- 장 소 : 경산시민회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일 시 : 2007. 4. 11(수) 15:00
- 장 소 : 울산시의회
- 참 석 : 이상천 의장

VI. 5분 자유발언

□□ 2007년 4월 12일(목) 제21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권영만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봉화출신 무소속 권영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00만 도민을 위해 경제도정을 이끄시는 김용대 부지사님과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전임교육에 힘쓰시는 조병인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 대선 정국과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발언에 앞서 한·미 FTA 타결로 인한 300만 도민의 피해의식과 늘어나는 청년실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증폭되고 있는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옹도 경북의 위상이 초라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은 물론 김관용 지사님과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힘을 모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열정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와 지역 여론에 따르면 연말에 있는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파벌을 조성하고 지역정서를 혼탁시키는 불건전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주민이 뽑아주신 도의원으로서 도민에게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는 권력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정치와 확연히 구별되는 주민자치, 생활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준수하여 도민에게 최대 최고품질의 복지증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필요시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임무를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듣기로는 양대 기관인 집행부와 의회가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본연의 임무수행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영달과 출세만을 위해 유독 대선후보에게 줄서기를 서슴지 않는가 하면 이도 모자라 도민의 공복인 공무원에게 정치의 관여를 강요하나 묵인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300만 도민을 기만하는 공공의 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대선을 앞두고 21세기 경북비전은 물론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많이 발굴해서 다음 정부의 공약사업에 우선 포함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결정해야 할 시기라고 믿습니다.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봉사자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수기치인 하는 개인의 기본덕목과 정자정야란 정치의 본질적 의미를
깊이 새겨 자기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장길화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장길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이 제8대 개막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차례 반복하여 느껴온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방의회 고유의 기능인 행정사무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안의 제안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능을 명시한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행법으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발전적인 측면으로 개선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집행하는 도본청 3조 9,000억원과 도교육청 2조 1,700억원 및 각 사업별로 추진하는 제반업무를 불과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감사의 실효성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물리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 집행기관의 경우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약 2,450억원의 예산으로 일반직 2,407명과 소방직 2,270명으로 합계 4,343명이

이론과 실무를 겸한 200여 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확보되는 반면에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조직과 특수한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으로 단순구분하여 보고하고, 또 이를 감사결과 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도 행정사무감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의 야기는 왜 행정사무감사의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를 단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집행기관을 실효적으로 견제·감시·감독하고 자치단체의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해 감사기능 강화를 전제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행처럼 집행기관이 집행기관 스스로를 감사하는 것은 도민들의 감사권이 왜곡될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감사관실을 도의회사무처 소속 별도기구로 이관하여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능을 상시 감사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며, 경상북도 자체 감사규칙에 의거 감사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시·군이나 도의 직속기관, 사업소 외에 도 분청, 본부·국 등에 대해서도 정기 및 수시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겠으며, 추후 감사결과를 보고 받는 방안도 함께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방향 역시 통제위주의 회계감사 분야의 틀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배양하고 활성화하는 지원 역할에 중점을 두는 정책

분야 위주로 감사를 하여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에 대해 책임행정 구현차원에서 감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만약, 도의회로 감사기구의 이관이 어려울 경우 현행 국회법 제10장 제127조제2항에 의거 국회에서 감사원에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요구가 가능한 것처럼 도의회에서도 감사관실에 도사무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 요구를 하고 추후 감사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도의회의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요구제도를 신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적극 제안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은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집행부의 잘못된 업무관행을 바로잡아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 확실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개선을 거듭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7년 4월 24일(화) 제21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전찬걸 의원(교육환경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울진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전찬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인은 농어촌지역 초임교사들의 배치사항에 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교사교육을 보면 초임 임용 시에 62시간을 연수하고 현지에 배치된 1년 후에 다시 62시간을 연수하며, 3년 후 1급교사 시에 183시간 연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지에서 교사로서 학생지도와 업무를 제대로 소화하려면 최소한 4~5년의 교사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초임교사의 빠른 현장적응과 학생지도를 위하여 초임교사를 경력교사가 지도해주는 1대 1 멘토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사전보는 초·중등교사 인사관리기준에 의하여 시행되는 바, 전보순위결정은 전보점수 고점자의 희망지를 1순위로 하고 다음으로 교육경력자순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의하면 초임교사는 전보점수도 없고 교육경력도 없기 때문에 근무선호도가 없는 비선호지역이나 벽·오지에 배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경북지역에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교사정원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초임교사 임용의 비율은 평균 3.5%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전체교사 대비 초임교사 배치비율을 보면 포항이 1.8%, 경주 1.7, 안동 1.1, 경산 1.2, 칠곡 1.8, 청도 2.6%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초임교사의 배치비율이 초임교사 임용 평균비율인 3.5%에 크게 못 미치는 극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경북지역에서 오지로 손꼽히는 북부지역에서는 초임교사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보면 울진지역이 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영덕 12.7, 청송 12.5, 군위 9.8, 상주 7.7, 의성 7.4, 영양 7.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이들 지역의 초임교사는 발령 후 2년 이내에 50% 이상이 대도시 인근지역으로 전보 발령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매해마다 초임교사가 많이 오는 지역은 경력교사가 부족하여 교사간 1대 1 멘토링도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어촌지역학교 학생이 경상북도 초임교사의 교원 현장실습 대상인지 교육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교육현실을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북부 농어촌지역에서 전체 교사 정원에 대한 초임교사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전보점수와 근무경력만을 우선시

하는 제도적 문제로 발생되는 것이기에 그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매우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제도적 개선으로 초임교사는 전보특례를 적용하여 교사가 많은 학교를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고 경력교사비율에 맞게 초임교사를 일정비율로 골고루 배치하고 1대 1 멘토링도 철저히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은 물론 근무기간도 3~4년으로 하여 학생지도와 업무처리능력을 충분히 갖추게 한 후에 교사가 적은 농어촌 등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촌의 소규모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근무평정에서 도시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데다가 산점도 낮아져 교사들이 벽지의 농어촌학교를 기피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결국 농어촌은 초임교사 집중배치와 경력교사 근무기피현상으로 학교교육을 위하여 학부모들이 농어촌을 점차 떠나게 된다는 문제점은 도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책을 도교육청에서 시급하게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상임위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게 됐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진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는 1992년 7월 13일 도의회에서 도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최종후보지 결정을 목전에 두고도 이전지역을 결정하지 못한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사이 전남도청은 이전을 완료했고 이어 충청남도도 도청이전지역을 최종 결정함으로써 도청을 도내로 이전하지 못한 곳은 부끄럽게도 경상북도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8대 도의회는 지난 2월 9일 이 자리에서 역대 어느 의회에서도 하지 못한 역사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마침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경상북도도 우리 땅에 도청을 옮겨놓기 위한 늦었지만 큰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는 절차뿐만 아니라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행위제한감점제를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완벽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지역에서 전국의 학자군에 대하여 경상북도 도청이전 입지선정 방향이라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불법 홍보물을 이메일을 통해 다량으로 송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경상북도의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도청이전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도 전에 공정성에 찬물을 끼얹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묵과할 경우 앞으로 이러한 반칙은 도내에서 건잡을 수 없이 나타남은 불을 보듯 명백한 일이며, 나아가 이전지역을 최종

결정하더라도 끊임없는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사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도청이전절차 시행초기부터 도민의 화합을 꾀는 이러한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정한 규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칭 경상북도와 시군의회가 함께하는 페어플레이 협약을 하루속히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칙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기강을 세움으로써 최종적으로 도민의 축복과 박수 속에 이전지역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이상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엄숙히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 : 6건
- 승인 · 동의안 : 1건
- 건의 · 결의안 : 2건

■ 조례안 : 6건

□□ 조례안

-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
-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4월 24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3조중 “[별표]”를 “별표”로 한다.

별표 일비란의 액수 “80,000원”을 “11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구분	액수	구분	액수
일비	<u>80,000원</u>	일비	<u>80,000원</u>
여비	지방의회 의원 여비지급구분 표상의 시·도의원 상당액	여비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4월 24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국내 다른 시·도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경상북도의 위상을 제고한 자
2. 문화예술 · 체육 · 과학기술 · 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자

4. 기타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조서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수여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방법) ①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외국인 및 해외 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다른 시·도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 ①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도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경상북도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도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여 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명 예 도 민 증(제4조 관련)

제 호

명 예 도 민 증

국 적 :

성 명 :

대한민국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에 경상북도민을 대표하여
본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경상북도지사 ○ ○ ○ □□

No.

CERTIFICATION OF HONORARY CITIZENSHIP

Name :

Nationality :

On behalf of the people of the Province of Gyeongsangbuk-do
and myself, I hereby award this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to above-mentioned person for his outstanding
contributions and cooperation to the Province's development.

년 월 일

도지사 사인

도지사 영문이름

Governor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도 민 증(제4조 관련)

제 호

명 예 도 민 증

소 속(주소) :

성 명 :

경상북도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공헌하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큰 사랑과 인연이 함께하길 바라는
경상북도민의 뜻을 받들어 본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 ○ ○ □ □

[별지 제3호서식]

공로조서(제3조 관련)

공로조서			
국적			
주소 또는 소속			
직업 및 직위			
성명		생년월일	
공로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			
주요경력			
년월일	이력	년월일	이력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월일			
추천자	직위	성명	□□

[별지 제4호서식]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기록대장(제5조 관련)

연번	수 여 년월일	성 명	국 적	성별	생년 월일	공적 내용	주소	연락처	사진	비고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경상북도민증서(이하 “명예도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서수여) ①명예도민증서는 [별표] 서식에 의하고,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명예도민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2조(수여대상)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국내 다른 시·도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경상북도의 위상을 제고한 자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자 4. 기타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제3조(권리·의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조서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수여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4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수여방법) ①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다른 시·도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 ①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도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경상북도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도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여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4월 24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로 한다.

제1조중 “문고지도자”를 “문고회장”으로 하고,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 및 대학(교)”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①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 장학금과 우등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유공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나 부부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이거나,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가. 고등학교 입학생은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 재학생은 학교 성취도 평가에 의한 “미” 이상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

나. 2년제 이상 대학입학생은 입학성적이 재적학과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 재학생은 평균 70점 이상 또는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장학생을 제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시군지회장 또는 시군 새마을회장(이하 “시군 회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경상북도새마을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시군회장은 시·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시·군 부녀회장 및 시·군 문고지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회장이 시군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도지사와 새마을운동중앙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장학생은 연간 시·군당 지역 새마을 지도자 수의 7% 이내로 한다.

②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2:1로 유지되도록 선발 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의 120%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3호중 “불량할 때, 학업성적이 80/10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를 “불량할 때와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시군지회장”을 “시군회장”으로, “도지부회장”을 “도회장”으로 한다.

제10조중 “향구적 발전과 조국 근대화”를 “활성화와 국가발전”으로 한다.

제11조중 “또는 시·군에”를 “시·군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 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u>문고지도자</u>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u>중·고등학교</u>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문고회장</u>..... <u>고등학교 및 대학(교)</u>.....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u>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u>	제2조(장학금의 종류) ①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 장학금과 우등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금의 자격) ①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u>남여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u>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인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u>현직 새마을 지도자와 부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u>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u>남여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u>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유공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u>현직 새마을 지도자나 부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이거나,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u>

현 행	개 정 안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단, 신입생인 경우는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 재학생의 경우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 의한 “미” 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제1항의 각호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가. 고등학교 입학생은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 재학생은 학교 성취도 평가에 의한 “미” 이상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 나. 2년제 이상 대학입학생은 입학성적이 재적학과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 재학생은 평균 70점 이상 또는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장학생을 제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시군지회장(이하 “시군 지회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도지부(이하 “도지부”라 한다)회장이 도지사 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시군지회장은 시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 운동중앙회 시군지회장 또는 시군 새마을 회장(이하 “시군 회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경상북도 새마을 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시군회장은 시·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시·군 부녀회장 및 시·군 문고지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선정) ①도지부회장이 시군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u>도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1.~4. (생략)	제5조(선정) 도회장이 시군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도지사와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군당 지역 새마을 지도자의 7%로 한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장학생은 연간 시·군당 지역 새마을 지도자 수의 7% 이내로 한다. ②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2:1로 유지되도록 선별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중학교 의무교육지역은 실제의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의 120%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 및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학업 성적이 80/10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4.~5. (생략)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1.~2. (현행과 같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와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4.~5. (생략)

현행	개정안
②시군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u>도지부 회장</u>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 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②<u>시군회장</u>..... <u>도회장</u>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 마을 운동의 <u>항구적 발전과 조국 근대화</u>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u>활성화와 국가발전</u>
제11조(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u>또는 시·군에</u> 장학기금특별 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①..... <u>시·군에</u>..... ②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4월 24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또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여구역 주변지역”이라 함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읍·면·동 중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읍·면·동을 말한다.
2.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이라 함은 영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읍·면·동 중 경상북도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읍·면·동을 말한다.

3.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에 대한 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확정된 도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영 제9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3. 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2. 도시계획·건축분야의 전문가, 지역경제 발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4월 24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를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7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에 한한다) 제한이 필요한 지구
2. 위락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락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에 한한다) 제한이 필요한 지구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한한다) 제한이 필요한 지구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 2(위원의 제척·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변경(영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13조제2항 중 “5인 이상 9인 이하”를 “5인 이상 12인 이하”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진흥지구의 경과조치) 조례 제2778호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부칙 제5조제4호 규정에 의하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한 시설용지지구 중 영 제31조제2항 제7호 라목에 의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구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4월 24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 관리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차량 및 기타장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라 함은 건설기계를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함으로써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수리”라 함은 파손된 건설기계와 사용 불가능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분해하여 용접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기본사용료(감가상각비, 정비비, 관리비를 말한다)와 운전경비(조종사·조수 인건비와 숙식비, 현장정비비, 유류대를 말한다)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조종사”라 함은 건설기계·차량을 운행하는 조종사 및 운전원을 말한다.

제2장 건설기계 운영·관리

제3조(건설기계 운영관리) ①건설기계는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 (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집중관리하고, 사업소장 책임하에 운영·관리한다.

②사업소장은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비·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월1회 이상 예방점검·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고장이 발생한 건설기계는 고장발생 즉시 수리여부를 판단하여 조속히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소장은 건설기계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건설기계 전문정비사업체에 정밀점검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유지) 사업소장은 보유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 이력카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 수리대장
3.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증

제5조(건설기계 사용) ①건설기계는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응급복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②건설기계 중 교량점검차, 도로측구준설차를 시·군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량점검·도로측구준설에 한하여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는 건설기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건설기계는 민간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내 민간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보유하지 아니하는 교량점검차는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6조(건설기계 투입계획 수립) ①사업소장은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공사에 분기별로 건설기계 투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군에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말 10일전까지 다음 분기 사용계획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사용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건설기계 사용신청) 사업소 보유 건설기계 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량점검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기계 사용 결정) ①사업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사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투입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소장이 조정 결정한다.

제9조(건설기계 사용기간의 갱신) ①사업소장은 건설기계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그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사업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갱신사항을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건설기계의 회수)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건설기계를 일시 회수할 수 있다.

1. 지진, 홍수, 산사태,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강설, 강우, 강풍, 결빙 등 기후조건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건설기계의 조종 등) ①건설기계는 사업소 소속 건설기계 조종사가 조종하여야 한다.

②조종사는 “별표 1”의 조종수칙을 준수하여 안전 운행과 친절, 공정하게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기계 운행일지를 비치하여 일일운행 현황 및 일일점검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조종사는 건설기계운행 중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용 료

제12조(사용료 산출기준) ①사업소장은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기본사용료, 현장정비비, 조종사·조수인건비는 매년도 건설표준 품셈을 적용 산출하여야 하며, 조종사·조수 숙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산정) 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입된 건설 기계 사용료의 산정은 기준가동 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동 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건설기계 반납이 지연될 때를 포함한다)에는 시간당 사용료율에 의한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징수) 사업소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할 임차인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과 동시에 유류대를 제외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유류 부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시·군 및 임차인은 건설기계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수입조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건설기계 사용료는 경상북도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설기계조종사 조종수칙표(제11조제2항 관련)

1. 건설기계조종사

가. 조종 전

- 1) 엔진 및 하체에 누출개소를 확인한다.
- 2) 각부 오일, 물, 연료 등을 확인 보충한다.
- 3) 엔진 시동후 브레이크 공기탱크 압력상태를 확인한다.
- 3) 조종일지에 작업개시 시간을 기록한다.

나. 조종 중

- 1)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않는다.
- 2) 작업 종사자외 타인은 승차시키지 않는다.
- 3)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 4) 각부 냄새 및 잡음에 유의한다.
- 5) 주의력을 집중하여 안전을 확인한다.
- 6) 가급적 급브레이크는 사용하지 않도록 도로사정에 맞게 서행한다.
- 7) 차선을 지키며 과속을 하지 않는다.
- 8) 통행의 우선순위를 준수한다.
- 9) 횡단보도, 건널목, 교차로에서는 일단 정지한다.
- 10)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다.

- 11) 신호대에서 출발시 좌, 우 안전을 확인한다.
- 12) 눈, 비, 안개 낀 날씨에는 1/2로 감속한다.
- 13) 작업중 건설기계에서 자리를 이탈할 때에는 제동장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 조종 후

- 1) 작업이 끝나면 지면이 고르고 안전한 위치에 주차한다.
- 2) 공회전하는 동안 각부 누출개소, 소리, 냄새에 유의한다.
- 3) 작업후 연료탱크에 연료를 항상 가득히 주입한다.
- 4) 운행일지를 작성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 방 정 비 표(제3조제2항제1호 관련)

건설기계명 :

등 록 번 호 :

범 례	V	양 호
	X	요조정
	XX	요교환
	XXX	요수리

순위	정 비 개 소	상 태	정 비 내 용
1	각부 주유 및 고체상태		
2	청결유지 여부		
3	엔진오일 및 기어오일		
4	에어크리너(오일)		
5	연료계통 및 연료휠터		
6	냉각계통(부동액)		
7	배터리(볼트 및 비중)		
8	타이어		
9	드레그링크 및 타이롯드		
10	제동장치 및 브레이크오일		
11	크러치(오일)		
12	각종 메다 및 계기		
13	차체 및 용접개소		
14	엔진상태 및 오일휠터		
15	환 벨트 및 각종 벨트		
16	누출개소(오일씰, 가스켓)		
17	변속장치		
18	하부구동부분		
19	연료계통		
20	유압기계통		
21	각부 체결상태		
특기 사항 및 의견			
조종사	☐ ☐	점검자	☐ ☐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이력카드(제4조제1호 관련)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	--	------	--

사 진

(전면)
(190mm×268mm 백상지 240g/m²)

차 대	제 작 회 사		일 련 번 호				중 량	톤	
	형 식		규격 및 용 량				길 이	cm	
원 동 기	구 분 사용처	제작회사	형 식	일련번호	기통수	마 력	연 료	넓 이	cm
								높 이	cm
	주 체							타 이 어 규 격	× ply
								시 동 방 법	
	운반채 또는 작 업 용							축전지형 및 용량	
관 리 상 황	주 체	취 득 일 자		취 득 방 법		취 득 가 격			
						원(\$)			
	구조변경 및 수 리 상 황	일 자	주요수리개요		수 리 비	일 자	주요수리개요		수 리 비
	처 분	처 분 일 자		처 분 방 법		처 분 금 액			
비 고	특기사항 :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 20 ○ 작성책임자 : 사업소담당 : □□ ○ 확 인 자 : 사 업 소 장 : □□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수리대장(제4조제2호 관련)

건설기계명 :

수 리 기 간			수 리 내 역	유 지 비					비고
월별	착수일	완료일		계	부품	외주수리	현장정비	보험 및 등 검사	

[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계사용(변경)신청서(제7조 관련)

□□ 신청내역

건설기계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일수	사 용 장 소 (주소 및 교량명)	비고
교량점검차					

경상북도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하오니 건설기계 사용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운행일지(제11조제3항 관련)

					계	담 당	과 장
년 월 일							
차 량 번 호		운 행 상 황	운 행 계	km	유류수불 현황	전일잔량	ℓ
			전일누계	km		소 비 량	ℓ
조종사			금일누계	km		잔 량	ℓ
승차자	용 무	경유지 및 목 적	시 간 출 발도 착		운행km	운행확인	

(전면)

건설기계일일점검표

점검자

□□

점 검 내 용	상 태	비 고	점 검 내 용	상 태	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③ 케이블 및 체인은?		
② 라지애다 물은 채워져 있는가?			④ 정착시 고정장치는?		
③ 에어크리나(오일 레벨)은?			⑤ 자동차 문은 잘 잠겨졌는가?		
④ 조정계통 작동은? (계기포함)			⑥ 열쇠 보관은?		
⑤ 타이어 압력은?			<기타 특기 사항>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연료 및 조향장치는?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조정계통의 작동은? (계기포함)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압력은?					
			범례 : v 양호, x 요조정, xx 요교환, xxx 요수리		

(후면)

[별지 제6호서식]

건설기계 고장보고서(제11조제4항 관련)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 재

건 설 기 계 명		작 업 명	
규 격		고장발생위치	
등 록 번 호		고 장 일 시	
고장개소			
○			
○			
○			
의견사항 및 조치사항			
○			
○			
○			
가 동 상 태			
가동중 :		가동중단 :	
위와 같이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종 사 :		□□	
수화일시 :		년 월 일	
송 화 자 :			
수 화 자 :		□□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 귀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제14조 관련)

건설기계 임대차에 관하여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을 “갑”으로 하고 임차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제1조(사용조건) “갑”은 “을”에게 다음 조건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한다.

1. 건설기계명 :
2. 사용목적(공사명) :
3. 사용기간 :
4. 사용장소 :

제2조(사용료) ①건설기계사용료는 경상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일금 원정(₩)으로 한다.

②“을”은 사용료중 유류대를 제외한 금액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시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유류(연료)대는 동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임차인이 현지 부담한다.

제3조(사용료정산) 건설기계 사용기간 중 고장 또는 천재지변, 기후조건,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기준 가동 미달시간에 대하여 정산된 사용료를 “갑”은 “을”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인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도일에 건설기계를 인수하지 못한 때에는 인수지연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아래의 경우에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기간중 재해응급복구등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계약목적 이외에 건설기계를 사용한 때

제6조(조례의 적용) 이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도로 보수 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에 의한다.

제7조(보칙)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갑”, “을” 상호의견을 달리한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485번지

기관명 :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

성 명 :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 □□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승인 · 동의안 : 1건

□□ 승인 · 동의안

- 2006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견

의안 번호	89
----------	----

제 의 연월일 : 2007. 4. 16
제 의 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1. 주 문

경상북도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경상북도교육청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9인을 선임한다.

2. 제의사유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와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경상
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도의원, 공인
회계사, 세무사, 재무관련 경험자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나. 자치단체가 집행한 세입·세출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산
검사를 통하여 검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도·운용상의 각종 문제
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건전재정운용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기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자 함.

3. 제의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선임 : 9인(인적사항 : 붙임 1)

- 도 의 원(3인) : 이용석·김기홍·이상용 의원
- 재무관련 경험자(2인) : 서재규, 류윤기
- 공인회계사(2인) : 김대원, 이상혁
- 세 무 사(2인) : 이성훈, 장영일

나. 위촉기간 : 2007. 5. 14 ~ 6. 2(20일간)

※ 업무사정에 따라 검사기간 조정 또는 연장

다. 결산검사 대상

- 2006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2006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붙임 1]

결산검사 선임위원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연령	주 요 경 력	비고
계	9인			
도의원	이용석	61세	- 제6대 도의회 농수산위원 - 제7대 도의회 농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농수산위원	
	김기홍	44세	- 제7대 도의회 기획과학위원 · 지역균형발전특위 간사 - 제8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 · 예결특위 위원	
	이상용	48세	- 제4대 영양군 의회의장 - 제8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 · 윤리특위 간사	
재 무 경험자	서재규	62세	前. 세정회계과장 前. 청송부군수	
	류윤기	61세	前.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 前. 포항교육청 관리국장	
공 인 회계사	김대원	37세	- 경북대 경영학과 졸업 13개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수행	
	이상혁	35세	- 한경회계법인 근무 - 농림부FTA기금지원 평가단 참여 -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2006)	
세무사	이성훈	38세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졸업 2004. 7월 세무사 개업	
	장영일	34세	- 경북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2004. 7월 세무사 개업 -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2006)	

■ 건의 · 결의안 : 2건

□□ 건의 · 결의안

- 한·미 FTA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 조달청 안동사업소 준치에 관한 건의안

한·미 FTA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86
----------	----

제안년월일 : 2007. 4. 5

발 의 자 : 농수산위원회

1. 제안이유

- 그간 한·미 FTA 협상중단을 위한 우리 도의회의 강력한 건의와 농업인과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졸속적으로 타결됨으로써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신과 분노가 고조되어 있음.
- 특히, 우리 도는 농가의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고 한우사육 규모와 과수재배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이번 FTA 타결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음.
-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분야 협상결과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거부할 것과 농어촌과 농어업을 살릴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대 국회 및 대 정부 촉구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상과정의 완전공개와 협상결과의 전면적 재검토
- 농업경제 혁신을 전제로 한 경쟁력 강화 중장기 대책 마련

- 농가부담 경감대책 추진 및 직·간접 피해품목 소득보전 보장
- 국회에서 협상과정의 의혹을 밝혀내고 비준동의안 거부

3. 결의내용 : 별첨

한·미 FTA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4월 2일 한·미 FTA협상에 대한 각계각층의 찬반을 둘러싼 깊은 우려와 갈등을 뒤로 하고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이미 지난 2006년 8월 28일 한·미 FTA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과정의 공개와 농업인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이는 철저히 묵살되고 말았다.

물론, 이번 한·미 FTA협상이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우리 경제의 제도약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일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운이 걸려있다는 이 중차대한 협상을 우리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명확한 목표와 치밀한 협상전략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심지어 국민여론 수렴과정 하나 없이 미국의 논리에 끌려다니는 협상자세로 시종일관함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버렸으며,

더욱이 이번 한·미 FTA로 인해 당초 협상대상이 아닌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철폐와 빼있는 쇠고기 수입 개방 등 우리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은 더이상 희생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상황으로 추락하게 만들었다.

이제 한·미 FTA로 인해 가격 경쟁력 등에서 세계 최강국인 미국산 농축산물이 무관세로 밀려오면 연간 농업부문의 피해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무려 30만명 이상의 농촌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부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농업과 농민을 또 다시 배반하고 우리 농업을 말살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 경북은 농업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한우·사과·복숭아·포도 등 주요품목의 전국 최대생산지로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한·미 FTA에 따른 희생을 경북의 농업과 농민이 대부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한·미 FTA가 국가경제 진흥이라는 대의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말하면서도 FTA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대신에 농가피해 직불보전과 폐업 보상금 지급 등 돈으로 해결하려는 저급하고도 단순한 농업지원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없으며 농업을 이대로 포기하면서 추진하는 한·미 FTA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당장 붓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농민의 정당한 주장과 절규를 들어 막는 데에만 급급한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촌에 쏟아부은 지원금 130조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과오를 되풀이하자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부의 무책임한 단순지원정책은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농민들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상황을 다시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농업분문에 대한 FTA협상은 정부가 미국의 압력과 회유에 굴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한·미 FTA의

국회비준 거부를 위하여 300만 경북도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다. 또한 향후 EU, 중국 등 농업강국과 FTA협상을 계속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시급성이 되는 한·미 FTA를 지금 당장 바로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정부가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 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1. 정부는 졸속적인 한·미 FTA협상과정을 완전 공개하여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특히 농어업부문의 극심한 피해를 초래한 협상결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1. 정부는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수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의 현대화 등 농어업 경제의 혁신을 전제로 하는 경쟁력 강화에 모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벼랑 끝의 농어업을 되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1. 정부는 한·미 FTA협상결과의 추진에 앞서 영농자금 이자, 세제감면, 농가부채 상환기간 연장 등 획기적인 농가부담 경감 대책을 반드시 추진하고 아울러 소득보전품목을 모든 직간접 피해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 대책으로 개방 후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실질적 수준의 소득보전을 보장하라!

1. 국회는 한·미 FTA협상에 대한 국익의 관점에서 심도있는 청문회는 물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협상과정의 의혹을 밝혀내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농어업 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국회비준동의안을 거부하라!

2006년 4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조달청 안동사업소 존치에 관한 건의안

의안 번호	87
----------	----

제안년월일 : 2007년 4월 13일
제 안 자 : 김만용 의원 외 17인

1. 제안이유

-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역은 국토균형발전에서 소외되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11개 시군을 관할하는 조달청 안동사업소 폐지계획은 가뜰이나 어려운 북부지역의 작은 희망마저 앗아가는 경제몰락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 특히, 최근 국군체육부대가 관할지역인 문경시로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조달수요가 급증할 것이 분명한 만큼 안동사업소의 존치는 너무도 당연하다.

2. 주요내용

- 조달청 안동사업소는 안동뿐만 아니라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의 광활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국군체육부대가 관할지역인 문경으로 이전이 확정되어 앞으로 조달수요는 한층 증가할 것임으로 안동사업소를 폐지한다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이다.

- 또한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역은 국가균형개발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지금껏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안동사업소를 폐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실과 정서를 도외시한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으며, 참여정부의 균형개발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임을 명심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북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의 조달청 안동사업소 준치 건의안을 수용하여 폐지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3. 건의내용 : 붙임

조달청 안동사업소 존치에 관한 건의안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역은 지금까지 국토균형발전에서 소외되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11개 시군을 관할하는 조달청 안동사업소마저 폐지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북북부지역의 경제를 말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최근 국군체육부대가 관할지역인 문경시로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조달수요는 한층 증가할 것이 분명하여 조달청안동사업소의 확대개편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근시안적 탁상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치에 맞지 않고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실과 정서를 도외시한 행정의 표본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북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조달청 안동사업소 폐지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건의·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단체와 범 도민이 참여하는 쟁기대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폐지계획을 저지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1. 국토균형개발에서 소외되어 시름에 빠져있는 안동을 비롯한 경북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

1. 국군체육부대가 문경으로 이전이 확정되어 조달수요가 급증할

것이 분명함에도 조달청 안동사업소를 폐지하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즉각 철회하라.

1. 지역발전이 바로 국가의 발전임을 직시하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북지역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의 건의안을 즉각 수용하라.

2007년 4월 24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214회 임시회)



2007. 5 인쇄 / 2007. 5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화 : 602-5139

FAX : 602-5140



<비매품>